

WTO 기본통신 협상과 우리의 대응

姜 雯 錫

情報通信部

I. 서 론

작년 10월 5일쯤으로 기억된다. 필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기본통신협상에 참석하기 위하여 파리의 리용역을 출발하는 프랑스 고속 전철인 TGV 열차는 탄 적이 있다. 협상관계로 외국 여행은 잦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국내와는 다른 환경때문에 다소의 생경함은 어쩔 수 없었다. 그날은 쾌청한 날씨였기 때문에 TGV의 시원스런 주행과 함께 차창너머로 보이는 프랑스의 시골 풍경은 한국의 가을 들뜰의 모습과는 또다른 정취를 느끼게 했다. 밖으로 보이는 이국적인 풍경에 도취되어 보다가 무심코 다른편 좌석에 눈을 돌려 보니 30대의 동양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창에 기대어 잠을 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관광객인 것 같은데 이 좋은 구경거리를 잠으로 흘려보내다니. 필자의 소견으로는 돈많은 일본인이 여행하는 것이려니 짐작되었다.

중착역에 다다를 쯤, 여권검사 때문에 깨어난 그 남자에게 같은 동양인으로서의 반가움과 호기심에 행선지를 물으니 뜻밖에도 한국인이 아닌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는 회사원인데 휴가를 내어 여행중이라는 것이었다. 10월에 한가로이 여행하는 것이 부럽다고 하자, 그 남자는 세계화되는 경쟁사회에서 요즘의 젊은이들의 경험(해외여행)과 실력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가 여행객으로서 불만한 구경거리를 뒤로하고 열차안에서 잠을 청한 이유를 비로소 알 것 같았다.

세계화시대라고 한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한다. 바뀌는 세상에서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변해가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적어도 동참하기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 폐쇄적인 체제하에서의 사고 방식은 열린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여행했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여행을 통해서 진정 얻어야 할 내용은 간과하게 되는 것이다. 마음이 달랠다면 처

음보는 프랑스 시골풍경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고 여행하는 마음도 살아남기 위한 피곤함보다 새로운 것에 접하는 즐거움이 앞섰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현재 정보통신산업에는 개방과 경쟁이라는 변혁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이 변혁의 물결은 WTO 기본통신협상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새로운 변화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취하는냐에 따라 그 결과에 많은 차이를 가져다 줄 것이다.

II. 세계통신시장의 변화와 동향

1. 통신서비스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최근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통신사업은 자연독점성이 강한 대표적 독점사업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따라서 통신사업에의 시장진입은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신사업은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거나 또는 국가가 직접 통신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는 통신사업이 가지는 몇가지 특성에서 기인한다. 통신사업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은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성이 존재하는 사업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여러개의 서비스를 여러기업이 각각 생산하는 것보다는 한개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인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한다고 믿어져 왔다. 이에따라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통신사업은 국가주도로 발전되어 왔다. 또한 통신은 망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비자의 이익이 증가하는 망의 외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독점은 당연시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통신사업에 대한 인식은 1980년대 일부 선진국들에 의해 진행된 통신사업의 자유화가 '90년대 들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크게 바뀌게 되는데 이는 통신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우선 공급측면에서 보면, 통신기술의 발전과 기술융합은 통신사업 특성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산업간의 경계를 급속도로 허물어 뜨리고 있다. 통신서비스중

전통적인 전송의 역할이 감소하고 정보처리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통신사업의 용어가 전기통신에서 정보통신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유무선 통신기술의 결합 및 방송/통신/컴퓨터의 기술 융합으로 산업간의 경계가 모호해져 종래의 산업분류에 의한 규제가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수요측면에서 보면, 통신의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내용 또한 고도화, 다양화되고 있다. 음성 위주에서 데이터, 영상으로 통신의 내용이 확대됨에 따라 통화용량의 폭발적 증가를 수용할 대용량의 전송매체와 새로운 통신매체의 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통신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 특징은 통신서비스의 개방화, 국제화 등으로 요약된다. 전통적으로 통신서비스는 비교역서비스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부가통신서비스에 이어 기본통신서비스까지도 교역대상으로 간주되어 현재 통신서비스 개방관련 협상이 진행중이다. 교역 대상은 멀티미디어의 진전에 따라 음성, 데이터, 영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시내·시의·국제망의 통합과 함께 통신사업이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통신서비스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논의되는 대표적 사례가 최근 OECD에서의 논의이다. 우리나라가 업저버로 참여하고 있는 OECD의 산하위원회인 정보통신정책위원회(ICCP :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 Policy)에서의 최근 논의에서, 통신을 타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차원에서 산업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이 위원회의 논의가 중요한 것은 선진국의 정보통신정책이 G7이 설정한 방향을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에서 구체화하여 WTO에서 실현하는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의 흐름은 OECD 국가의 정책방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OECD국가는 경쟁정책을 국가 경제성장의 촉진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통신정책도 보호주의에서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나아가고 있다.

2. 변화의 양상

변화의 양상은 몇가지 형태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쟁도입, 규제완화, 민영화, 대외 개방, 자유화 등이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는 키워드들이다. 경쟁도입은 부가통신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 무선통신서비스와 유선전화서비스로 확산되고 있는데 부가통신서비스는 전면자유화, 기본통신서비스는 외자가 허용된 복점체제 구축에서 경쟁체제로의 변화가 일반적인 양상이다. 기본통신서비스 경우 경쟁은 재판매에서 통신망으로, 장거리(시외,국제)에서 시내로, 무선계에서 유선계로 쪽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바꿔 말하면 경쟁도입은 경쟁의 효과가 큰 부문, 초과이윤이 보장되는 부문,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부문,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지 않는 부문, 새로운 통신매체에 의한 신규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문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시내전화에 앞서 시외전화에서 경쟁의 도입되게 된 것은 시외전화시장은 시내전화시장에 비하여 매몰비용(Sunk Cost)이 크지 않고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지 않으며 시외요금의 원가를 크게 상회하여 시장진입에 따른 초과이윤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최근의 각국의 경쟁에 대한 통신정책 동향은 경쟁도입차원을 넘어 실질적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즉, 기존의 지배적 사업자 외에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경쟁사업자 육성을 시작으로 다수통신사업 경쟁체제로 전환중이다. 또한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도입함으로써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기능은 반드시 정부가 담당하여 한다는 전통적 관념으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기업의 공익기능이 공기업 자체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공익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공기업 경영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공기업 고유의 비효율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민영화를 통하여 소유와 규제 의 분리, 정부의 간섭 및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 민간자본의 유치, 민간의 창의력 도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민영화의 목적은 각국의 정치, 경제적 상

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세계적인 추세임에는 틀림없다. 기본통신 협상에서 민영화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공정경쟁의 차원에서이다. 즉, 공정한 감시자가 되어야 할 정부가 지배적 사업자를 소유, 경영하고 있다면 공정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비단 선진국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나타나는데 선진국과는 또 다른 배경에서 논의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화서비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감한 민영화, 규제완화, 경쟁도입을 통해 외국자본, 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등 자발적인 시장개방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국가가 투자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단기간에 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하여는 다른 선택의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90년대의 통신시장의 변화의 양상을 특징짓는 것중의 하나가 통신사업의 글로벌화와 전략적 제휴이다. 이것은 각국의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에 맞물려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통신사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통신사업자간 전략적 제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제휴의 양상은 국경과 사업영역을 초월한 사업자간 전략적 제휴의 확산으로 이것은 세계통신시장의 양분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제휴는 세계유수의 통신사업자간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AT&T의 미국내 최대 셀룰라업체인 McCaw 주식인수, 국제전화 서비스를 위한 미국 MCI와 BT의 제휴, Sprint와 FT, DT와의 제휴, Bell Atlantic, Nynex, US West, AirTouch사간의 이동전화사업 통합, AT&T, Apple, IBM, 지멘스의 멀티미디어 개발그룹 결성, SouthWestern Bell과 Micro Soft사간의 대화형 비디오 사업추진 등이 그 예이다. 통신사업의 변화의 양상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통신사업변화 양상

| 동향 | 배경 | 주요내용 |
|---------------|---|--|
| 통신시장의 자유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통신산업의 주도권을 유지 • 개도국: 경제성장을 위한 하부구조 조기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촉진 정책의 도입 • 통신사업의 민영화, 경쟁도입 |
| 통신사업의 글로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개방에 따른 신규 통신시장의 확대 • 전세계 모든 이용자에게 이음매없는 통신 서비스 제공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미, 유럽, 아·태지역에 집중 • 규제완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 허용 |
| 통신사업자간 전략적 제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수요의 고도화 및 다양화 •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출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d-to-end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통신망 구축 • 통신/방송부문 복합서비스 제공 |

3. 주요국가의 통신사업 자유화 동향

가. 미국

현재 미국의 통신시장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꿀 1934년 통신법 개정안이 '95년에 상원과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가까운 시일내에 미국 통신시장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통신 경쟁 및 규제완화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내전화회사들은 자신의 시내전화 시장에 경쟁이 가능하도록 상호접속, 설비공유 등에 관한 1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FCC의 승인을 받아 시외전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독점 시내전화사업과 장거리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함이다. 또한 CATV회사의 시내전화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시내전화회사가 자신의 통신망을 통한 영상서비스의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1984년 CATV법에 정한 CATV/전화회사 겸영금지 규정을 철폐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의 최대 통신사업자인 AT&T가 통신기기와 벨연구소, 데이터통신과 컴퓨터 제조부문을 분리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분할의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급변하는 시장변화와 정부규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분할전략이 더 적절한 생존전략이라는 판단과 함께 최근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통신서비스분야에 역량을 집중시키는데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나. 독일

'95년 3월 독일은 유선전화 시장의 경쟁을 '98년 이전에 시작하는 근본적인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독일정부는 사업자 수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업자를 모두 허가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을 '96년 중 법제화하여 '97년에는 신규 사업자에게 면허를 부여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따라 1998년부터는 DT의 독점이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DT는 '99년까지 50% 신주발행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이와같은 독일 통신시장 자유화 계획은 '95년1월 초에 나온 유럽의 전기통신 미래에 관한 EU의 Green Paper에 따른 것이며, 1995년에 초안이 작성되고 1996년에 의회에서 제정될 예정인 자유화 이후의 전기통신규제법안에 포함될 것이다.

다. 영국

1991년에 BT와 Mercury의 복점체제를 종료시켜 더 많은 신규참여를 인정한 이후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전환된 영국은 1995년 3월 현재 면허신청 건수가 100여개에 달하며, 이중 약 60개의 면허가 인정되고 있으며 이중에는 20여개가 공중통신사업자의 면허를 받고 있는 등 경쟁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최근에는 독립규제기관인 OFTEL이 "Effective Competition: Framework for Action"이라는 정책문서를 발표하여 경쟁체제 도입 이후의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어떠한 단계에서 취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 이어 '95년 8월 7일 OFTEL은

다시 “Beyond the Television and the PC”라는 자문문서에서 다가올 21C세기 정보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기술발전과 그 이용에 관련한 규제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등 통신자유화 선도국으로서 향후 통신정책의 방향정립에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라. 일본

일본에서의 전기통신 자유화에 대한 논의는 1985년 NTT의 민영화 이후 10년간 전기통신의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통신사업자가 국제통신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또한 시내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경쟁이 도입되었지만 의도한 만큼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된다. 이에 대한 원인은 상당부분 미국, 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일본정부는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규제완화의 주요내용은 살펴보면, NTT법과 KDD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5까지 소유 가능하도록 외자유제를 완화('92.8월)하였으며, CATV의 MSO 인정, CATV사업자의 통신사업 겸영 용인('93년 12월)으로 시내전화에도 경쟁이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영상통신 등 전용선서비스에 대하여 외국 위성통신사업자의 자국내 진출을 허용하여 위성통신이용의 자유화('94년 6월)를 단행하였으며, 통신회선 이용의 자유화를 위하여 공.전접속을 자유화('95.4월)하였으며 '97년까지 음성계 전용선과 공중회선과의 접속을 완전 자유화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NTT는 '95년 9월 28일 사실상 독점으로 되어 있는 시내통신망을 신전전 각사나 CATV 회사등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방침을 결정했는데 이는 통신망을 개방함으로써 최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NTT의 분리.분할을 회피하며 경쟁을 통한 업계활성화 및 자사의 경영 효율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95년 7월에 선보인 일본의 개인휴대통신 서비스인 PHS는 '95년 11월말 현재 45만명의 가입자를 기록하여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데 PHS사업자들은 해외 각국에 동 방식의 우위성을 적극 홍보하고 외국 통신사업자와의 제휴에 의한 실험과 합병회사의 설립 등 적극적인 해외시장, 특히 아시아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해외 진출 노력은 아시아시장에서 PHS를 세계표준화하려는 일본 우정성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III. WTO 기본통신협상

1. WTO 체제의 출범과 통신서비스 산업

가. 기본통신협상 관련 WTO 서비스 무역 자유화 체계

'86년 9월 UR협상 출범시 선진국의 강력한 주장으로 서비스교역 자유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결과로 WTO체제 출범과 함께 서비스 교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품교역에 관한 협정(GATT)과는 별도로 체결된 협정이 서비스 일반협정(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이다. '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이 협정은 크게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부속서(Annex), 자유화 약속(National Schedule)으로 구성된다. 6부 29조로 구성되어 있는 기본협정은 최혜국 대우, 투명성, 국내규제, 독점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2부 일반적 의무와 규율부분; 시장접근, 내국민 대우, 추가적 약속을 규정하고 있는 제3부 구체적 약속부분; 분쟁해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제5부 제도규정 부분이 협정과 관련된 핵심조항들이다. 부속서는 협정본문의 각규정을 서비스 분야별로 적용하는데 필요한 보완역할을 하는 것으로 최혜국대우(MFN)면제, 자연인 이동, 항공, 금융, 금융 II, 해운, 통신, 기본통신협상 등 8개 부속서로 되어 있으며 자유화 약속은 각국 서비스 분야의 개방범위와 일정을 다룬다. 통신에 관한 부속서는 통신서비스가 경제활동의 한분야이면서 다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구조라는 이중적 역할을 인정하고 모든 경제활동분야에서 공중통신망(PTTN)과 공중통신서비스(PTTS)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정의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PTTN과 PTTS에 대한 접속, 서비스 요금, 기술 표준, 단말장치 부착요건 등의 공개 및 합리적이고 무차별적인 서비스의 이용보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기본통신 협상결과의 적용

이러한 협정내용은 '95년 1월 1일부터 부가통신 분야에 대하여는 적용되고 있으나 기본통신분야는 WTO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96. 4. 30까지 협상하여 양허하기로 결정하여 최혜국 대우 등의 적용이 유보되고 있다. 각국이 양허할 구체적 약속은 시장진입(Market Access),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추가적 약속(Additional Commitment) 등 세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협상방식은 타 회원국의 Request에 대한 자국의 Offer 제출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기본통신 협상결과에 따라 기본통신자유화 약속을 하는 경우 향후 모든 국내기본통신에 대한 규제 조치는 WTO 서비스일반협정(GATS)에 일치시켜야 하며 GATS체계에 일치하지 않는 모든 규제 조치는 폐지되거나 변경되어야 한다. GATS의 제6조에서 국내규제 조항을 살펴보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허가 등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해야 하며 허가기준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넘지 않아야 하고 객관적·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허가제도 자체가 서비스 공급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규제조치의 합리적, 객관적, 공평한 운용을 요구하며 분쟁해결절차 및 신속적 분쟁해결을 규정하고 있다.

2. WTO 기본통신협상 추진현황

가. UR통신협상 논의경과

기본통신개방 협상은 '90년 12월 미국이 최초로 기본통신개방 문제를 거론하면서 비롯된다. 이후 미국은 '92년 2월 한국, 일본, EU 등 통신선진국 12개국을 지정, 장거리, 국제전화 등 기본통신분야 개방협상 논의를 요구하게 되는데 미국 주장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장거리, 국제통신시장에서의 사업자수 제한 철폐

- 외국사업자의 독자적인 실비구축 또는 회선 재판매에 의한 서비스제공 허용
- 장거리, 국제통신서비스에 외국인 투자허용
-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원가에 기초한 기본통신서비스에의 접근보장
- 독립규제기관에 의한 공정·투명한 규제절차 확립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당시에 각국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급진적인 것이어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에 '92년 5월 스웨덴이 절충안으로 기본통신교역의 점진적 자유화를 목표로 다자간협상을 촉구하게 된다. 스웨덴의 제안 이후 다수국가가 다자간 협상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전환하게 되었으나 EU와 한국은 참여를 유보하는 입장이었다. '92년 12월 캐나다가 중도적 입장에서 기본통신협상 진행방식에 대한 아래와 같은 Protocol을 제안하게 된다.

- 협상방식: 기본통신다자간협상그룹(NG-BT: Negotiating Group on Basic Telecommunications) 구성하여 다자간 협상 진행
- 협상참가범위: 서비스일반협정 모든 가입국에 개방
- 협상기간: UR을 종료하는 각료회의 이후 1개월이내 협상개시, 2~3년이내 협상종료
- 협상범위: 모든 기본통신서비스
- 협상결과반영: 기존 국가간 양허계획서에 기재되며 모든 서비스 일반협정 규정 적용

이어 '93년 7월 캐나다가 협상대상이 될 기본통신의 정의 및 범위, 자유화 약속 기재방식, 외국기업 진입제한, 기본통신서비스 진입에 대한 사업자수 제한유무, 시장진입이 허용된 후 공정경쟁보장 문제 등 기본통신협상의 구체적 논의대상을 담은 공통의제(Common Agenda)를 제출하게 된다. 이때까지도 한국은 참여유보 입장을 재천명하였으나, 미국 등 다수국가는 우리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게 됨에 따라 결국 1993년 12월 협상참여를 통보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가 계속 다자간 협상 참여

를 거부할 경우, 미국 무역법에 의거한 미국과의 쌍무협상에서 한국의 상대적으로 약한 협상력으로 인해 다자간 협상에 비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통신시장이 개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93년 12월 UR협상 종료시 기본통신다자간협상을 '94.5월 이후 개최하여 '96.4월 까지 종료기로 합의하였으며 17개국이 WTO 기본통신 다자간 협상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 WTO 체제하에서 기본통신협상 추진현황

지금까지 1994년 5월 제1차 협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이래 1995년 12월 현재 10차 협상까지 진행되었다. 협상대상은 유선전화(시내/시외/국제)를 비롯하여 무선통신(이동전화, 무선호출, PCS), 위성통신 등 모든 기본통신서비스에 걸쳐 있다. 협상참가는 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는데 1995. 12월 현재 미국, EU(15개국), 일본 등 46개국이 참가중이다. 7차 협상까지는 주로 협상의 진행방식 및 각국의 기본통신담변서를 중심으로 각국의 규제제도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졌으며 1995년 7월 말부터 미국, 일본, 홍콩, 뉴질랜드, 멕시코가 최초 양허안을 제출한 이래 12월 현재 호주, 캐나다, 스위스, EU, 슬로바, 체코, 헝가리, 노르웨이, 싱가포르, 베네주엘라, 한국, 칠레 등 31개국이 최초양허안을 제출한 상태다.

다. 협상의 주요쟁점

시장진입에 관한 사항으로는 모든 기본통신에 대한 서비스공급자의 수 제한 폐지 및 외국자본 참여 제한 폐지/완화이며 내국민대우에 관한 사항으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대우 금지가 주요쟁점이다. 규제제도에 관한 사항으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허가절차 및 기준 설정, 비차별적, 합리적인 상호접속제도 운영, 합리적인 주파수할당 및 번호배분, 원가에 기초한 요금 설정, 통신망 구축을 위한 토지이용권 보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편적 서비스 운용, 공정경쟁보장,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있다.

3. 외국의 양허안

현재 ('95년 12월 10차 협상)까지 양허안을 제

출한 국가의 수는 31개국이며 각국이 제시한 최초 양허안의 주요내용은 <표 2>와 같다. 양허내용은 시장진입 및 내국민대우부문 위주로 되어 있는데 추가적 약속에 대한 양허는 협상진행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출된 양허내용의 핵심은 크게 외국인에 대한 주식소유 지분한도와 시장개방시기, 그리고 사업자수에 대한 제한여부로 대별된다.

외국인 소유지분한도에 대한 각국의 양허내용을 보면, 미국과 EU 대부분의 국가, 호주, 홍콩, 뉴질랜드, 베네주엘라, 체코, 스위스, 노르웨이 등이 완전개방하는 양허안을 제출하고 있다.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슬로바 공화국, 헝가리 등은 20%~75%의 양허계획을 제출하였다.

시장개방시기는 몇개 국가가 서비스별로 단계적 개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EU의 경우 일률적으로 '98. 1. 1를 개방시기를 잡고 있다. 이것은 자국의 통신사업이 어느정도 경쟁력을 갖도록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사업자수 제한에 있어 많은 나라가 서비스 별로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리스, 아일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베네주엘라, 체코, 스위스, 슬로바공화국, 헝가리 등의 경우, 자국의 가장 중요한 통신시장에 대하여 독점 내지 복점 아니면 2000년 이후에 사업자수 제한을 완화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수의 제한은 시장개방의 효과가 크게 반감되기 때문에 외국인 소유지분한도가 100% 개방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시장개방의 본질은 외국인이 타국의 통신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통신회사를 설립·경영하는 직접투자 우선으로 기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보다는 단순한 투자 수익을 도모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무선통신분야의 경우 가용주파수에 따른 사업자수 제한은 주파수 자원이 유한하다는 것에 의한 것으로 이에 의한 사업자수 제한은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주파수 개발에 의한 추가 사업자 선정시 자의적인 선정이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

〈표 2〉 양허계획 체결국가의 최초 양허안의 주요내용

| 구분 | 한 국 | 미 국 | E U | 일 본 | 캐나다 | 호 주 |
|----------|--|---|---|---|--|--|
| 외국인 지분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무선전화 : 33 % KT : 20 % | 제한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외에는 '98.1.1부터 제한없음(스페인, 포르투갈은 2003년부터) - 벨기에 : 비EC국가 49 % - 프랑스(무선) : 비EC국가 20 % - 스페인 : 비EC국가 25 % - 포르투갈 : 비EC국가 25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통신사업 : 1/3 • NTT, KDD : 1/5 - 2종통신사업 : 제한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에 기초한 사업자 : 20 % ※ 직/간접투자 합계 46%까지 가능 - Teleglobe Canada : 의결권 갖을 수 없음 - Alberta : Telus의 경우 10 % | 제한없음 |
| 동일인 제한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통신사업 : 1/3 • NTT, KDD : 1/5 - 2종통신사업 : 제한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berta : Telus의 경우 5 % - Nova Scotia : MT & T의 경우 1,000주 | 제한없음 |
| 대주주 제한 | 금지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임원수 제한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1/3(2종사업은 제한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에 기초한 사업자 : 20 % | 제한없음 |
| 사업자수 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파수 부족에 따른 제한이외는 제한없음 | 제한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외에는 '98.1.1부터 양허함 • 아일랜드 : 음성전화와 설비에 기초한 서비스는 2000년부터 양허 GSM서비스는 2003년까지 부점유지 • 그리스 : 설비에 기초한 서비스와 음성전화는 2003년부터 양허 | 제한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거리 전화 • Northwesterl, Ontario Northland Telephone사 및 Telebec사의 서비스 지역에서는 경쟁 불허 - 시내전화 • Stentor그룹 회원사의 서비스 지역에서만 경쟁 허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서비스 2개 ('97. 6.30까지) - 셀룰라 3개 ('97. 6.30까지) |
| 기타 제한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망에 접속한 음성회선 제관매는 2001년부터 개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정부 및 자는 소유불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포르투갈 : 자국에서 설립된 기업만이 국제전화 서비스 제공가능 - 그리스 : 자국에서 설립된 기업만이 통신서비스 제공가능 | 제한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eglobe Canada의 경우 : "비거주자"나 "associate"는 의결권 소유불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위정사업자와 셀룰라 제 2, 3 사업자의 경우, 호주인 지분에 대한 조건이 있음 |

| 구 분 | 종 류 | 싱 가 풀 | 뉴 질 랜 드 | 멕 시 코 | 베네수엘라 |
|----------|-------------------------------------|---|------------------|---|---|
| 외국인 지분제한 | 제한없음 | - 유/무선에 기초한 공중 서비스 : 49% - 재판매서비스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셀룰라서비스 : 30% - 여타 서비스 : 20% | 제한없음 |
| 동일인 제한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TCNZ의 경우 : 49.9%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대주주 제한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임원수 제한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1/2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사업자수 제한 | 제한없음 | 시장상황에 따름 | 제한없음 | - 국내/국제전화 • '96년 8월까지 복점 • 장거리전화 : '97.1월 추가 1개 사업자 - 셀룰라 • 지역마다 복점(총 9 지역) | 제한없음 |
| 기타 제한사항 | - 상업적 주제는 회사법 하에서 설립된 법인의 형태를 띠어야 함 | | | - Bypass는 허용되지 않음 - 멕시코에서 출생한 국민과 멕시코법인이 승인/허가를 득할 수 있음 | - 도시지역은 양허제외 - CANTV와 국가간에 명 작성한 계약서상에 명 기된 조건에 의함 |

| 구 분 | 체코공화국 | 스 위 스 | 슬로박공화국 | 행 가 리 | 노르웨이 |
|----------|--|---|--|---|---|
| 외국인 지분제한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디지털셀룰라 서비스 : 49% | 75% | 제한없음 |
| 동일인 제한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디지털셀룰라 서비스 : 49%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대주주 제한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임원수 제한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사업자수 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환기 및 관문국 설비 • SPT Telecom의 독점권을 2000년까지 유보 — 셀룰라서비스 • 아날로그 : 2010년까지 EUROTEL의 독점권 유보 • 디지털 : 부점체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PTT • 음성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전화 : 슬로박통신의 독점 — 아날로그 셀룰라 : 2011년까지 EUROTEL의 독점권 유보 — 디지털셀룰라 : 추가 2개사업자 허가예정 — 무선호출 : 추가 1개사업자 허가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장거리 전화 : 2002년까지 독점 — 시내 전화 : 2003년까지 독점 — 셀룰라/무선호출 • 아날로그 : 독점 • 디지털 : 부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셀룰라 : 부점('97년까지) |
| 기타 제한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전화, 전용회선 • 공공 입찰 (public tender)에 의해 사업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회선의 기초하에서 폐쇄이용자그룹을 위한 음성전화서비스만을 양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서비스 • TO로 부터의 허가가 요구됨 • 공공망에의 접속은 불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ypass는 불허 — PCN 서비스는 양허하지 않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년까지는 기지국/교환기를 제외한 망설비는 Telenor AS로부터의 전용회선에 기초하여야 함 — '97년까지는 위성통신의 경우, 공공음성전화 제공은 불허 |

에 의해 선정되어질 것이 요구된다.

사업자수 제한과 관련하여 양허계획상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는 경제적 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의 존재여부이다. 많은 국가에서 사업자 허가시 허가기준의 하나가 경제적 수요심사인데 이를 근거로 규제당국이 인위적으로 사업자수를 제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의 양허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대한 언급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분명하지 않아 향후 협상시 주요 논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EU와 미국의 경우 거의 완전 개방에 가깝고 다음이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의 개방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EU국가중 프랑스, 스페인 등 소유자분 및 일부서비스에 대하여 시장개방시기에 유보적인 국가는 협상여하에 따라 추가양허할 수도 있음을 나타내 신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통신협상의 주요국중 상대적으로 개방폭이 작다고 평가된 일본과 캐나다의 경우, 일본의 양허안은 협상전략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면 전통적으로 대외개방에 소극적인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캐나다는 현재도 미국의 통신사업자들이 상당히 진출해 있는 상태로 자국의 통신시장이 미국의 통신시장에 지나치게 예속될 가능성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미국, 영국처럼 국제통신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국제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와 전통적으로 개방적인 대외경제정책을 유지하는 국가에서 개방폭이 넓으며, 개도국이나 통신사업의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인식되는 국가는 사업자수 제한, 양허시기 등에 대하여 단계적인 개방계획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향후 전망

NGBT협상 참가국들의 전반적인 개방수준결정에 가장 큰 변수는 EU의 개방수준인데 제출된 EU의 개방수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전향적이어서 전반적인 개방수준 및 개방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양허안을 제출한 일본, 캐나다도 EU수준에 크게 못미치지 때문에 이들 국가의 추가적인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

후 협상은 협상종료시까지 최초협상안을 바탕으로 매월 개최되는데 1996년 3월까지 국가별 시장자유화 계획서 최종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과 EU의 개방안이 파격적이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에 대하여 강도높은 개방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장개방에 방어적인 국가들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 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한편 자유화 약속의 3개분야중 대부분의 국가가 시장진입(Market Access),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분야에 대하여는 양허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추가적 약속(Additional Commitment)분야에 대하여는 양허를 하지 않았거나 원칙만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추가적 약속부문은 시장진입과 경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중요한 분야로 시장개방에 적극적인 선진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규제제도가 매우 다양하여 단일안으로 협의되기는 곤란하나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5.11월~12월 미국,일본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PCRP(Pro-Competitive Regulatory Principles) 작성 움직임은 이런 의도의 일환이다. 또한 추가적 약속부분은 협상타결후 가장 많이 분쟁발생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한편 기본통신시장 개방은 GATS의 '점진적 자유화 원칙'에 따라 WTO협정 발효후 5년 이내에 후속 Round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이번 WTO / NGBT협상의 성패 유무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2010/2020년까지 APEC내 모든 투자/무역 자유화 논의(Bogor선언), G-7, OECD 등에서의 초고속정보통신망(GII)구축 논의 등 통신자유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민간투자 자유화, 원활한 정보유통 등의 원칙에 기초한 Multimedia 시장 개방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V.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1. 우리의 양허안

정부는 최초양허계획서를 '95. 12월에 개최된 제10차 WTO기본통신협상에 제출하였다. 제출된 최초양허안은 '95년 7월 4일 발표한「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 WTO기본통신협상설명회('95.8.17), WTO기본통신협상공청회('95.10.23) 등을 통해 나타난 국민, 업계, 연구소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양허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양허계획서는 지난 7월4일 발표한「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에서 표명된 「선 국내경쟁 후 국제경쟁」의 원칙에 따라 '98년부터 단계적으로 국제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외국 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강화 및 국내업체의 해외진출 촉진 등을 고려하여 대폭적인 자유화, 개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선 국내경쟁” 추진효과를 최대화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양허수준이 결정된 것이다. 양허계획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허대상서비스

서비스제공방식은 설비보유방식 및 회선임차방식에 의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양허서비스는 음성전화 서비스(시내/시외/국제전화), 팩킷교환 데이터 전송서비스, 회선교환 데이터 전송서비스, 텔렉스서비스, 전신서비스, 팩시밀리 서비스, 전용회선서비스, 디지털 셀룰라 서비스(아날로그 셀룰라 서비스는 제외), 무선호출서비스, PCS, TRS, 무선평대이터서비스 등 12종이다. 서비스 제공형태중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국경간 공급)는 금지하며 위성통신서비스는 협상 논의과정에서 양허범위와 서비스 제공방식 등이 구체화되는 경우 최종양허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나. 사업자 수 제한

가용주파수에 제약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정부의 수요/공급 판단에 의한 사업자수 제한은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허가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자가 사전공고없이도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디지털셀룰러 통신방식을 CDMA로 결정한 것과 같이 통신망의 통합성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기술방식에 의한 허가제한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 외국인 지분제한

외국인에 대한 지분제한은 '97년말까지 현행제도를 유지하며 '98. 1. 1부터는 유.무선 모두 33%까지 허용한다. 이는 '98년 이후에 유선분야도 33%범위(동일인 포함) 내에서 합작투자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유선분야에 대한 지분제한 완화는 앞으로 국내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조에 대한 내.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KT에 대해서는 정부투자기관으로 기본통신서비스 제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업자임을 고려하여 외국인 지분한도를 20%까지 제한하였다. 단, 현재의 금융분야 양허내용('97년에는 양허수준이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KT를 비롯한 DACOM, KMT 등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취득은 개인 3%, 합계 15%로 제한된다. 외국인에 대한 대주주 금지 제한은 현행대로 모든 사업자에게 계속 유지된다.

라. 대표자 및 임원수 제한

'98. 1. 1부터는 통신사업에 외국의 경영능력기술력 도입 및 전략적 제휴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대표자 및 임원수 1/3 초과 금지 제한을 폐지하였다. 이는 국내 통신사업자에 외국인 이사는 물론 외국인 사장까지 임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

마. 재판매(회선임차방식에 의한 서비스)

재판매서비스는 설비보유 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차해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통신서비스로서 이들 서비스는 '98년부터 완전 자유화된다. 이에따라 사업자수 및 외국인 지분제한은 없으나,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제공하는 형태(call-back

등)는 금지된다. 그리고 재판매서비스중 전용회선을 임차하여 공중통신망에 접속하여 음성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예: 전화사업, 셀룰러, PCS, TRS 등)는 국내사업자의 준비기간과 제도 보완 등을 고려하여 2001년부터 허용하기로 하였다.

바. 규제제도

규제의 투명성, 상호접속제도, 공정경쟁보장장치, 규제기관 독립성 등 규제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자간협상 진행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규제제도에 관한 원칙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국내제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양허하였다.

○ 규제의 투명성

- 서비스제공과 관련된 법령과 규제사항은 일반에 공표함
- 각종 제도를 공시하며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함

○ 상호접속

- 설비보유 사업자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합리적이고 원가에 기초한 요금으로 상호접속을 제공하여야 함
- 병목설비(bottle neck facilities: 시내망 등)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타 서비스 공급자에 영향을 미치는 망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 경쟁보장

-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배적인 설비보유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거나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설비보유사업자가 경쟁이 도입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분리하여야 함

○ 통신규제기관

- 사업자간 원만한 분쟁해결이 곤란한 경우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

이상의 양허계획서의 내용은 최초 양허안으로서 협상여하에 따라서 다소 수정될 여지는 있으나, 주요내용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기본통신분야 자유화에 관한 양허계획을 제출함에 따

라 앞으로 정부는 협상과정을 통해 국제경쟁을 도입하는 만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기회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 WTO 기본통신협상에 따른 파급효과

우리는 기본통신협상에 대하여 외국인의 주식지분 소유한도, 양허되는 서비스, 시장개방에 의한 국내통신시장 잠식 등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면 시장개방에 함축된 중요한 의미를 간과해 버리기 쉽다. 또한 우리는 시장개방시 이의 긍정적 효과를 의도적으로 눈감아 버리는 경향이 있다. 기본통신협상이 세계통신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명제를 심본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에서 협상결과에 따른 시장개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장개방시 국내 통신시장의 잠식이라는 그 부정적 효과와 더불어 시장개방시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 의미가 있는가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시장개방효과에 대한 그 온전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며 통신시장개방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통신시장의 개방은 대응여하에 따라 우리에게 위기이면서 동시에 우리 통신사업의 발전을 한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통신시장 개방시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긍정적 측면으로 요금인하, 품질향상, 서비스의 다양화로 이야기될 수 있다. 이것은 통신시장 개방시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외국사업자에 의한 국내통신시장의 잠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들은 가장 피상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우리가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통신시장개방을 향후 한국의 통신사업 발전의 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파급효과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국내시장개방에 따라 외국사업자의 국내진출과 함께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와의 제휴가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업자간 제휴는 주로 주식의 소유지분을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개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시장개방과 제휴와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DT, FT, US Sprint와의 제휴이다. 1994년 6월 발표된 제휴의 내용은 DT와 FT가 각각 Sprint의 주식을 각각 10%씩 보유하고 3사가 새로운 합작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결국 시장개방과 통신사업자간 제휴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는 바 앞으로 시장개방이 진행될수록 국제사업자간 제휴도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에게 외국사업자와의 제휴가 특히 중요한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이다. 첫째 기술협력 측면이다. 그동안 국가적 차원의 독자적인 전자교환기의 개발과 통신설비의 대량공급을 통하여 우리의 기술을 개도국에 수출할 정도로 우리의 통신장비 생산능력 및 통신망 운용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선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선진 기술과 격차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무선통신, 위성통신 등 신규서비스의 경우는 상당히 외국의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술습득은 세계통신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시장개방이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셈이다.

또다른 하나는 외국의 통신사업자와 제휴를 통하여 글로벌사업을 전개하거나 또는 제3국에 공동진출을 모색할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세계통신시장에서의 외국의 통신사업자와의 제휴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만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 정부의 해외투자 제한 완화조치와 통신시장개방이 맞물려 질 경우, 우리의 통신사업자가 해외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적인 통신사업자와 제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부가통신분야에서 외자제한 폐지에 따라 SDS, STM 등 국내사업자에 외국사업자가 지분참여를 한 바 있으며 기본통신분야에서도 무선분야의 경우 신세기통신에 직접투자의 형태로 이미 외국의 지분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개방시 외국사업자의 국내통신시장의 진출형태는 현지지사 및 독립법인 설립, 국내기업과 합작

회사 설립, 연락사무소, 해외사무소, 대리점 계약 및 국내기업과의 제휴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형태는 국내사업자에 의한 신규합작회사 설립으로 출발하여 시장개방확대시 외국인 단독에 의한 독립법인 설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패턴은 이미 부가통신시장에서 이루지고 있다.

둘째로 시장개방은 통신기술의 표준화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화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통신의 연계, 유·무선의 복합화, 관련소프트웨어의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상이한 환경하의 망간 상호접속성과 상호운용성이 추구되는 기술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만 통신시장 개방에 따라 다수의 사업자가 등장하면 복수의 네트워크와 다양한 단말기간의 원활한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상호접속성의 확보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 표준화는 단순한 통신규약정립의 단계를 넘어서 국내외 시장의 선점 및 첨단기술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표준화를 누가 주도하며, 어떤 표준이 채택되는가에 따라 시장지배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향후 시장개방이 본격화 되면 이와 비례하여 자국의 통신표준을 세계화하려는 각국가의 노력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째, 시장개방은 더 많은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시장개방하면 국내시장만을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시장개방을 국내시장의 보호라는 관점에서만 보려는 편향된 시각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세계통신시장의 자유화로 국내 통신사업자의 해외진출 기회가 더 많아짐은 당연하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대부분의 통신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으나, 기본통신협상 결과에 따라 선진국의 통신시장의 제도적, 실질적 진입제한이 제거될 경우, 고부가가치 신규서비스 분야 등 틈새시장(Niche Market)에 직접 또는 전략적 제휴에 의한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의 경우 ITU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많은 국가가 한국을 통신개발의 모범국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살려 개도국의 통신시장에 진출할 여지는 그만큼 많다고 할 수 있

다. 현재도 개도국에 대한 해외진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기본통신협상결과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시 우리 통신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는 개도국의 통신시장 자유화 확대를 위하여 개도국의 기본통신협상 참여분위기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개방을 통하여 국내 통신사업을 세계수준으로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지난 '95년 7월 4일 발표한 『통신사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은 본격적인 경쟁과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통신사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자 하는 정책의지의 반영이다. 통신사업의 조기 경쟁체제 구축을 위하여 사업허가 신청에 있어서 사전공고방식을 폐지하고 경쟁이 원칙, 독점은 예외라는 인식하에 시내전화를 제외한 모든 통신사업에 전면적인 국내경쟁체제 구축하며 한국통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한국통신에 대한 규제완화 및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한국통신 자체의 경영혁신 방안을 조기에 강구 시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체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경쟁보장을 위한 정책기능과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여기서 표명된 선 국내경쟁, 후 국제경쟁 원칙은 다름아닌 국내경쟁을 통한 통신사업의 경쟁력 강화로 통신사업의 세계화를 추진하려는 통신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한편 경쟁의 촉진과 시장개방에 따라 규제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수반될 것이다. 지금은 독점에서 경쟁으로 이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제도를 도입하고 정립해 나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시장진입장벽 제거를 위한 법개정 작업과 함께 상호접속, 접속료, 원가계산, 회계분리,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 등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작업이 시급하다. 시장개방은 단순히 문만 여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본격적인 경쟁도입과 시장개방시 사업자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 고 문 헌

- [1] WTO 서비스협정 및 제6, 7, 8, 9, 10차 기본통신협상 자료집, WTO 사무국, 1995
- [2] 최병일, WTO 기본통신협상 대책 방향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진흥협회, WTO 기본통신협상 공청회 자료, 1995.10.23
- [3] 통신산업의 바람직한 경쟁구도, 한국개발연구원, 1994.10
- [4] 한철수, 서비스산업 개방과 WTO, 다산출판사, 1994
- [5] 주요국의 전기통신 자유화 정책과 규제동향, 한국통신, 1995

저 자 소 개



姜 雯 錫

1957年 6月 25日生

1983年 8月 연세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사)

1986年 8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1991年 6月 미국 하버드대학원(케네디스쿨) 졸업(과학기술정책학 석사)

1995年 현재

정보통신부 서기관 WTO 기본통신협상대책단 근무